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83 발의연월일: 2024. 11. 1.

발 의 자:김도읍·장동혁·인요한

정점식 • 유상범 • 구자근

김석기 • 백종헌 • 신동욱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어린이 보 호구역의 도로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 여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차의 전면만을 촬영하여 단속하는 장비가 대부분이여서 번호판이 후면에만 부착되어 있는 이륜 자동차의 단속이 불가능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의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촬영이 가능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음.

또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차의 전·후면이

활용가능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의 단속을 위하여 차의 전·후면이 촬용가능한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장비를"을 "장비 중 차의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이 가능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로 한다.

제1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중 차의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이 가능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이 법 시행 당 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12조제4 항 및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의 요건에 맞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 ① ~ ③ (생 ·해제 및 관리) ① ~ ③ (현 행과 같음) 략)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 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 서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u>장비를</u> -----장비 중 차의 설치하여야 한다.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 이 가능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 비를----.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 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u>노인 보호구역 또는</u> 장애인 보 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

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중 차의 전면 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이 가 능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